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4.8(화) 15:00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수완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3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2일

3. 제안 이유

-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 따라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
‘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’

⇒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·지원 조례

- 나. '유기[Organic]', '유기식품', '사업자' 등의 용어 신설
(안 제2조)
- 다. 사업자의 책무 규정 보완(안 제4조)
- 라. 친환경인증 기여도 평가항목으로 '친환경 인증면적
증가실적' 신설(안 제12조제3항제7호)
- 마.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 지원 근거 마련
(안 제13조제3항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'은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 따라
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
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의
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
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